

www.kmcmmission.or.kr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ISSION GUIDE BOOK



감리교회 해외선교 가이드북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감리교회
해외선교 가이드북

**MISSION
GUIDE BOOK**
THE KOREAN
METHODIST
CHURCH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 발간사

이원재 목사
(선교국 총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리교회 모든 선교동역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1세기 세계선교시대를 맞이하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67개국에 863명(2010년 2월 현재)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선교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와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정보 교류는 세계선교와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본부 선교국은 그 동안 개 교회 및 선교동역자들과 소통하며 선교에 관한 정책과 안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선교 정책과 각 나라별 선교정보와 안내를 담은 해외선교백서를 발간 한데 이어, 금년에는 감리교회 해외선교에 관련된 일체의 규정과 정보를 담은 해외선교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침서는 해외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감리교회 해외선교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는데 일익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실무적으로 수고한 해외선교기획부 한 미령 목사님을 비롯한 실무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현장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동역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ISSION GUIDE BOOK

감리교회 해외선교 가이드북

1. 선교사의 정의와 자격	7
2. 선교사 선발 및 인준	8
3. 선교비 후원	14
4. 선교사 훈련	18
5. 선교사 파송	26
6. 선교사 관리	32
7. 선교지 관리	45
8. 선교사 복지	51
9. 선교사 위기관리	58
10. 선교사 관련 연회행정	69



선교사의 정의와 자격

- 1**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 과정과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필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나 단체로부터 선교비 지원을 받으며, 해외에서 현지인 선교를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교포)선교를 겸하여 하는 자로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교사라고 한다.
- 2** 선교사로 선발된 서리파송예정자는 목사안수 받기 전까지 ‘수련선교사’라 칭하며, 수련선교사는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실습기간을 가지며, 수련기간 동안 본부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교사 선발 및 인준

1 선교사 선발

- 1) 선교사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아 선교국에서 위탁한 7개 선교훈련기관 훈련(1년 과정)과 본부에서 실시하는 집중훈련(6일간)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 2) 인준심사 공고는 매년 12월 말과 8월 말경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독교타임즈, 7개 선교훈련원을 통하여 인준심사 일정을 공고한다.
- 3) 서류심사(1차)는 매년 1월 중순과 9월 중순 경에 실시하며 면접시험(2차)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2월 초와 10월 초에 실시한다.

- 4) 인준심사 결과는 본부 홈페이지, 선교국 게시판, ‘기독교세계’, ‘기독교 타임즈’ 등에 공고한다.

2 인준심사

- 1) 1차(서류심사) : 개별 면담을 통한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 2) 2차(면접심사) : 선교사의 소명감, 선교사의 영성, 선교계획, 선교사의 언어능력, 선교사의 재정, 선교사의 인성(성품) 및 건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3 자격별 선교사 인준자격 기준

- 1) 교역자 선교사(서리파송자/수련선교사 포함)
 -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Th, M or M., Div)
 - (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 (4) 본부 위탁 선교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2) 평신도 선교사
 - (1)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만 23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3) 전문인선교사

- (1) 고졸이상의 학력 소지자
- (2) 만 23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 (3) 본부 위탁 선교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 (4) 전문직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수상 경력과 시설 보유자

4) 협력선교사

- (1) '선교사별 인준자격 기준 1)항, 2)항, 3)항의 기준 미달인 자
- (2) 선교훈련 미필자는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별도로 정한 선교훈련을 이수하도록 한다.

5) 명예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은퇴 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자로서 해외선교 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6) 현지인 협동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인준과정을 필한 자

7) 기타

- (1) 이외 특별한 경우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국에서 요청한 모든 훈련과정을 필한 후 인준과정을 필할

수 있다.

- (2) 모든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필한 자는 세계선교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민법, 형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 인준 구비서류

1) 교역자/평신도/협력선교사

- (1) 선교사 지원서(2부)
- (2) 이력서(한글/영문 각각 2부)
- (3) 선교사 추천서(2부)
- (4) 선교비 후원약정서(2부)
- (5) 선교계획서
- (6) 본인 선교사훈련이수증서(훈련기관/집중훈련 각각 2부)
- (7) 최종학력증명서
- (8) 건강진단서(종합검진/유효기간 1년)
- (9) 인성검사결과표(밝은마음 신경정신과 : 유효기간 2년)
- (10) 주민등록등본
- (11) 본인 여권사진(3매) + 가족사진(1매)
- (12) 선교사 인사카드
- (13) 나라대표 선교사 파송확인서
- (14) 배우자 선교사 훈련이수증서(훈련기관/집중훈련 각

각2부)

2) 명예선교사

- (1) 지원서
- (2) 이력서
- (3) 추천서
- (4) 후원약정서
- (5) 선교계획서
- (6) 건강진단서
- (7) 사진(본인 여권사진 3장/가족사진 1장)
- (8) 나라대표 확인서

3) 전문인 선교사

- (1) 4-1)번 서류와 동일하며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첨부

4) 현지인 협동선교사

- (1) 지원서
- (2) 이력서
- (3) 감리교회 선교사 추천서
- (4) 후원약정서
- (5) 선교계획서
- (6) 사진(본인 여권사진 3장/가족사진 1장)
- (7) 건강진단서

(8) 현지 선교경력증명서

(9) 나라대표 파송동의서

5 인준확인서 발급

- 1) 인준심사 결과 공고 후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목사의 인준확인서는 소속연회로 일괄 송부한다.
- 3) 서리파송예정자의 인준확인서는 인준심사 결과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전도사 임.면보고서, 지방인사위원회 회의록, 구역전도사결의서, '수련선교사 자원봉사신청서'를 선교국에 제출한 후 인준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 4) 평신도, 전문인, 협력, 현지인 협동선교사의 인준확인서는 본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 5) 정회원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연회행정 처리를 위한 '조건부 인준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소속 정리 후 증빙서류(소속 청원서 사본/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씩)를 선교국에 제출한 후 정식 인준확인서를 재교부 받은 후 연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선교비 후원

1 선교비의 정의

- 1)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말한다.
- 2)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 지원금 등을 말하며,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 200%), 자녀교육비, 퇴직금(연100%)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1회) 등이 포함된다.

② 선교비 모금 및 후원 방법

- 1) 선교비는 선교사지원자가 소속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하여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교비 후원제도는 주 후원교회와 부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 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3) 선교비는 투명하게 모금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선교후원금의 책정 및 송금

- 1) 선교후원금의 내용
 - (1) 생활비 : 선교활동비, 보험금, 비행기 값, 이사, 정착비 (자녀교육비, 상여금 연2회, 퇴직금 연1회 포함)
 - (2) 선교비 : 프로젝트별 특별사업비
- 2) 선교후원단체 구성

선교단체는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단체여야 한다.
- 3)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선교비 책정기준(단위:US\$)
 - (1) 선교비는 선교지의 생활수준, 선교사 가족 수에 따라 차

등 책정한다.

내역 지역	결혼 여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선교 활동비	지역명
1지역	기혼	\$2,500	\$500	\$600	미주, 서유럽,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만
	미혼	\$2,000		\$600	
2지역	기혼	\$1,500	\$500	\$500	동구라파, 러시아, 중동지역, 태국, 말레이시아, 중남미
	미혼	\$1,200		\$500	
3지역	기혼	\$1,500	\$100	\$400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개발지역
	미혼	\$1,200		\$400	

- 5)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후원교회의 자격구분

1) 주 후원교회 또는 단체

선교사의 소속교회(또는 단체)로써 전체 선교후원비의 50% 내외, 상해 보험료, 이사 비용, 비행기 값, 실습기간 중에 실시되는 훈련비와 준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며 선교후원자로서의 모든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선교후원자로서의 대표성을 갖는다.

2) 부 후원교회

전체 선교후원비의 10%이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선교

사역과 선교사를 직,간접적으로 돌보며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는 부 후원교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3) 일반 후원자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나 단체 또는 개인 후원자로서 선교사역과 선교사를 돕는 모든 동역자는 일반 후원자의 자격을 갖는다.



선교사 훈련

1 선교사 지원자 훈련 과정 및 기간

1) 위탁 선교훈련기관 훈련(1년 과정)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위탁 7개 선교사훈련원(감신대선교훈련원, 목원대선교훈련원, 협성대선교훈련원, 국제선교훈련원, MMTC선교훈련원, 인천세계선교훈련원, 웨슬리선교훈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1, 2학기/1년)

학과교육 위주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으로 1학기당 14주 (5시간/주당, 특강 90분 2회/매주 영어 1시간, 외국어 선택 1시간, 기도 및 영성훈련 1시간 등) 실시한다.

(2) 현지 적응훈련(약 10일간)

교과과정을 이수한 훈련생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교지 현장답사 훈련프로그램이다.

2) 집중훈련

매년 7월 첫째 주(6일간) 중 본부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지원자 대상 훈련프로그램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현지 집중합숙훈련(3주)

본부 집중훈련(6일)과 7개 선교훈련원의 현지 적응훈련(10일)을 하나로 묶어 해외에서 실시하는 장기 현지 합숙훈련 프로그램으로서 8월 중에 본부 홈페이지와 7개 선교훈련원을 통하여 공고하며, 10월말까지 접수마감하며 이듬해 1월 둘째 주에 실시한다.

4) 통신과정

국내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후임자로 자리고체 되어 급하게 파송될 시 선교국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정회원 부부에 한하여 실시되는 훈련원 과정(1년)으로 선교국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선교훈련 재교육(집중훈련)

(1) 집중훈련 이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가 인준을 받고자 할 시에는 본부 집중훈련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2) 선교사 사임 후 3년 이상 된 자는 집중훈련을 재수강하

여야 한다.

2 선교사 훈련 지원 자격기준

1) 교역자 선교사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만23세 이상 60세 이하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목사

2) 평신도선교사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만23세 이상 55세 이하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평신도

3) 전문인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평신도로써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이며 해당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2)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평신도로써 해당분야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4) 협력선교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또는 평신도로써 '선교사 인준자격기준'의 범주에서 벗어난 자로써 기준미달이나 선교사로 인정받은 자

5) 명예선교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가 은퇴 후 해외 선교에 헌신하고자하는 신체 건강한 자

3 7개 위탁 선교훈련원 소개

훈련원명 항목	감신대선교 훈련원	목원대선교 훈련원	협성대선교 훈련원	인천세계선교 훈련원
1. 입학서류	1. 지원서 1부 2. 사진(3×4) 3매 3. 졸업증명서 (고졸) 4. 지원동기서 1부 5. 답임추천서 6. 인성검사	1. 입학서류 2. 답임추천서 3. 최종학교졸업 증명서 4. 여권사진2매 5. 지원동기서 6.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7. 인성검사 8. 전형료(2만원)	1. 입학원서 2. 이력서 1부 3. 지원동기 및 비전(A4 1매) 4. 최종학력졸업 (재학)증명서 5. 답임추천서 6. 반명함판 2장 7. 전형료(2만원) 8. 인성검사	1. 지원서 1부 2.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3. 답임사추천서 4. 여권사진 3매 5. 지원동기서 6. 인성검사 7. 주민등록등본
2. 수업료	318,000원	250,000원	250,000원	300,000원
3. 강의시간	매주 월요일 (18:00~22:00)	매주 월요일 (17:00~21:30)	매주 화요일 (14주/학기당) 17:20~21:00 (석식 제공)	매주 화요일 (18:30~21:40)
4. 원서접수	■ 1학기 : 2월 중순 경 접수 / 3월 10일 이내개강 ■ 2학기 : 8월 중순 경 접수 / 9월 10일 이내 개강			
5. 특기사항		목회자/평신도/ 남,여선교회장/ 선교관련부서장 /선교 관심자	교역자/평신도	목회자/평신도/ 선교사 소명자/ 미인준 자
6. 문의처	02) 361-9241	042) 823-2066/ 829-7809	031) 299-0900 (구내 725)	032) 428-8660

4 훈련내용

- 1) 선교신학과 정책에 관한 훈련 : 감리교회 선교신학 및 정책, 세계선교 역사, 타 문화 및 종교 연구
- 2) 선교사의 소명과 자세에 관한 훈련
- 3) 선교 역사와 인물에 관한 훈련
- 4) 선교 사역과 전략에 관한 훈련
전도 및 제자훈련, 교회개척 및 성장, 선교전략수립, 전문인 선교, 단기선교, 문서선교, 협력선교, 선교행정과 재정관리, 선교사 사역의 실제 등
- 5) 각 선교지 연구에 관한 훈련 : 지역별 선교전략
- 6) 선교지 문화 적응 및 삶에 관한 훈련
문화적응, 선교사 위기관리와 갈등관리, 자녀교육, 선교사 건강관리 등
- 7) 타문화 및 종교에 관한 훈련
- 8) 언어훈련 : 영어(필수), 현지어(국내 학습 가능한 언어)
- 9) 선교영성훈련 및 공동체 훈련
- 10) 학기별 커리큘럼

	훈련과정	훈련과목
1 학 기	선교신학과 정책 선교사의 소명과 자세 선교역사와 인물 선교지 문화적응과 삶 언어	감리교 선교신학 및 정책, 세계선교 역사, 타문화 및 종교연구 선교사의 자기관리와 사역, 문화적응, 선교사위 기관리와 갈등관리, 자녀교육, 선교사 건강관리, 영어

	훈련과정	훈련과목
2학기	선교사역과 전략 각 선교지별 연구 타문화 및 종교 선교영성훈련 및 공동체 훈련	전도/제자훈련, 교회개척/성장, 선교전략 수립, 전문인 선교, 단기선교, 문서선교, 협력선교, 선교 행정과 재정관리, 선교사 사역의 실제, 타종교 연 구, 지역별 선교전략 개발
	현지 적응훈련(10일간)	교과과정(1,2학기) 수료자 현지 적응훈련 필수

5 훈련평가 및 이수증 발급

1) 훈련평가

(1) 인성검사

훈련원 입학 후 2개월 이내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개개인의 인성을 개발하고 협력사역자를 발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상담 또는 치료를 요할 시에는 선교국에서 위탁한 의료원에 의뢰하여 훈련기간 중 완치되어 파송될 수 있도록 한다.

(2) 7개 위탁선교훈련원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훈련원생 별 훈련 종합평가서를 인성검사결과표와 함께 선교국에 연2회(1, 2학기) 학사보고 하며 선교국은 이를 선교훈련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 학사보고 통과의례를 거친다.

(3) 훈련평가는 1회 결석은 3회 지각(조퇴 포함)과 동일하며 1회 결석 미만은 Make up paper로 Book Review 2권 이내이며, 3회 이상 결석시에는 제적시킨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훈련원장은 심의를 거쳐 대체 과제물을 최대 2회까지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2) 수료증 발급

매년 훈련 전 과정을 마치면 각 선교훈련원장은 졸업사정회를 통하여 수료자를 확정하여 선교국에 보고하고, 각 훈련원은 현지 적응훈련이 포함된 수료증을 선교훈련원장 명의로 연1회에 한하여 발급한다. 단, 수료증명서는 훈련 전 과정을 이수한 자가 졸업식 전에 인준서류를 제출코자 할 경우 ‘인준서류 제출용’으로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수료식

매년 훈련 전 과정을 마치면 각 훈련원별로 훈련원장이 수료자를 심사하여 확정된 후 수료식을 거행한다.



선교사 훈련

1 파송시기

1) 서리파송 선교사

서리파송자는 연회에서 선교사 목사안수(준1)를 받으면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2) 수련선교사

인준 받은 후 수련선교사기간(1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자원봉사 40시간은 수련선교사 기간 동안 이수토록 한다.
- (2) 소속교회 담임자는 연2회 수련선교사평가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역자(정회원),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협력, 현지인 협동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 4)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선교지 부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교사 파송 연기신청서와 사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 제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이를 준수치 않은 경우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소속 연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 파송장 발급

- 1) 연회 회원(교역자선교사)은 목사안수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연회감독 명의의 파송장을 발급 받은 후 선교국에 3-2)번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선교국은 연회에서 발급받은 파송장에 감독회장 직인을 연명하여 발급한다.
- 2) 평신도, 전문인, 명예, 협동선교사의 파송장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3-3)번의 서류를 접수한 후 감독회장 명의의 파송장을 발급한다.
- 3) 파송장은 자격별로 파송 후 1회에 한하여 발급하며 파송증 명서는 필요 요청 시 마다 신청서 접수에 의하여 발급한다.

3 파송예배

- 1) 인준 자는 파송예배 일정을 선교국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소속 연회와 공동으로 파송예배를 드린다.

- 2) 연회소속 교역자선교사는 소속연회에서 파송장을 발급 받은 후 선교사계약서(4부), 선교사서약서(1부), 상해보험증서 사본(1부), 파송예배순서지 등을 선교국에 제출한 후 감독회장 직인이 연명된 파송장을 발급하여 파송예배 시 수여한다.
- 3)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협력, 현지인협동선교사는 인준 받은 후 선교사 계약서(4부), 선교사서약서(1부), 상해보험증서 사본(1부), 파송예배 순서지를 선교국에 제출한 후 감독회장 명의의 파송장을 발급하여 파송예배 시 수여한다.

4 파송임기

- 1) 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선교사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2) 선교사의 기본임기 완료 전에는 선교지를 이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선교사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선교국은 이를 소속 연회에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 3) 모든 선교사의 사역 연한은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 선교사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 4) 사직 후 3년 내에 재 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3년이 경과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모두 필하여야 한다.

5 선교사역

선교사의 사역은 개인의 은사와 직능을 좇아 후원교회와 단체 및 선교국과 협의하여 특성 있게 선택 할 수 있으나 선교사회의 기본 사역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역 종류를 기본 범주로 한다.

- 1) 개인전도 및 제자양육
- 2) 교회개척 및 설립
- 3) 교회 지도자 훈련(신학연장교육) 및 개발
- 4) 신학교 설립 및 운영 혹은 교수 사역
- 5) 기독교교육 기관 설립 및 운영 혹은 교사 사역
- 6) 의료선교
- 7) 각종 사회 복지 사역(고아원, 양로원, 급식소 등)
- 8) 연구, 조사 및 문서사역
- 9) 선교국 본부 사역(정책, 행정, 훈련, 대외선교협력, 홍보, 동원, 지원, 선교자원개발, 후원교회 관리, 선교사 Member Care)

6 선교보고

1) 도착보고(파송선교사 명부 등록)

(1) 선교지에 처음 파송 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 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도착보고서 미제출 자는 파송선교사 명부 등록 이 불가함.)

(2) 파송 받은 자는 선교국에 출국 일정을 알리고 선교지 도착 즉시 선교국과 나라대표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

모든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 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하도록 한다. 최소 연2회(6월 말, 12월 말) 이상 선교보고서와 연1회 입출국증명서(12월 말)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라별 선교사회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한다.

4) 특별보고

선교지 또는 선교사에게 발생된 갑작스런 일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선교국에 상황을 보고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5) 귀국보고 안식년, 병가, 출장 등 기타 사유로 모국을 방문할

경우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일시귀국

선교사는 일시 귀국할 사유 발생 시 선교사회와 후원교회 또는 선교단체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일시 귀국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은 4주를 넘지 못한다. 단, 긴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나라대표와 선교국에 보고하여 구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하도록 하며 귀국보고서와 사유서는 추후 작성하여 소속 교회, 후원교회 또는 선교단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7) 기타

선교사 신상 및 인사행정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선교국에 보고하여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



선교사 관리

1 선교사 행정관리

- 1)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 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 2)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연2회)와 모든 선교관련 행정서류는 선교국을 경유하여 접수 확인된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토록 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 및 행정서류를 발급한다.
- 3)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② 선교지 이동

- 1)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 할 수 없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이동하거나 일시 귀국 하여야 할 시에는 선교지이동사유서와 소속교회(또는 후원 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개월 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제가를 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 3) 동일 국가 내에서의 사역지 변경은 선교사회와 파송교회(또는 후원교회/후원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교지 이탈

- 1) 선교지는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 2) 나라대표는 사역지 이탈자 발생 시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무단 이탈 시, 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
- 3) 선교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나라 대표에게 이탈한 것을 확인한 후 선교국은 일차 서면으로 경고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선교사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선교국은 이를 소속연회와 후원교회(단체)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4 소속 이동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 이동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한다.

5 안식년

1) 제출서류

- (1) 안식년 신청서
- (2) 안식년 계획서
- (3) 인수인계서
- (4) 안식년 기간 중 정기보고서
- (5) 복귀신청서(안식년 종료 시)

2) 안식년은 4년 임직 후 6개월, 6년 이상 임직은 1년/1회 이내로 한다. 단, 기본임기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3) 안식년 신청은 3개월 전에 현지 선교사회 대표와 소속(후원)교회의 합의를 거친 후 선교국에 안식년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식년 승인받은 선교사는 후임자의 선교지 관리를 위하여 인수, 인계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인수자, 인계자, 선교사회에서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하고 소속교회와 선교국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다.

- 5) 안식년 기간 중인 선교사는 연2회 정기적(6월 말, 12월 말)으로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복귀신청서는 안식년 종료 1개월 전에 선교국에 제출토록 하며 안식년 종료 즉시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단, 선교사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선교지로 복귀하지 않거나 선교국의 지도에 불응할 시, 선교국은 이를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자격을 심의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소속 연회, 소속교회 및 후원단체에 통보한다.

6 복직

- 1)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이나 휴직 되었던 자는 행정절차를 거쳐 복직할 수 있다. 단, 퇴직, 면직, 파면, 제명 등의 사유로 해직된 자는 복직할 수 없다.
- 2) 복직하고자 하는 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필한 후 복직하도록 한다.

7 사직

- 1) 선교사 사직은 임기만료 또는 극한 병고나 사고 또는 선교지에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선교사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선교국은 선교사회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사유서

를 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권고사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회와 소속교회(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 (1) 선교사가 안식년 후 미귀임이나 장기휴직,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교단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2) 파송이후 수회에 걸쳐 선교국의 행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3개월 이상) 선교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3) 위법한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 (4) 선교사로서 비정상적인 결혼생활, 부적합한 배우자와 혼인 등으로 인해 KMC 파송선교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 (5) 기타 사건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8 선교사회 조직

1) 세계감리교선교사회

- (1) 목적 : 선교국의 선교사 관리에 협력하고 감리교회 선교사들과의 상호 연락과 협력을 위하여 감리교회 본부 선교국 산하에 선교사회를 둔다.
- (2) 명칭 : ‘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감리교선교사회’라 칭한다.

(3) 임원 및 조직 :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를 1명씩 두며 각 나라대표는 나라별 선교사회 대표로서 실행위원이 된다.

(4)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5) 임원의 자격과 임무

① 회장 : 파송 된지 10년 이상 된 선교사로서 선교사회 총회에서 선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다수결로 선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임명한다. 회장은 감리교회 선교사회를 대표하여 선교국과 협조하며 감리교회선교사를 위한 업무에 힘쓴다.

② 부회장 : 파송된 지 8년 이상 된 선교사로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임명한다.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③ 총무 : 파송된 지 6년 이상 된 선교사로서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회장을 도와 각종 업무를 수행한다.

④ 서기 : 회장단에서 임명하며 각종 기록 및 업무연락을 담당한다.

⑤ 회계 : 회장단에서 임명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6) 선교사회의 업무

- ① 감리교 세계선교사업의 발전을 위한 선교국 및 선교단체와의 협조
- ② 선교사 상호 간의 유대 및 협력을 위한 업무
- ③ 기타 선교사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의 건의 및 추진

2) 나라별 선교사회

- (1) 목적 : 나라가 혹은 종족 내에서 선교사 개인사역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지도 및 선교보고, 선교전략 연구, 선교정책 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부 선교국 산하에 둔다.
- (2) 명칭 : “기독교대한감리회 ○○(나라명) 선교사회”라 칭한다.
- (3) 주요 임무
 - ① 선교사 친목
 - ② 선교사 및 선교사회 사역 현황 정기보고
 - ③ 발전적 선교사업 추진을 위한 선교전략 세미나 실시
 - ④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 ⑤ 선교지 재산 행정서류 관리 및 보고
- (4)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정회원 : 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준회원 : 감리교회 협력선교사, 명예선교사, 현지인
협동선교사로서 발언권만 갖는다.

(5) 임원 조직 및 임기

대표(회장), 총무, 회계 및 서기, 감사(각1명씩)를 기본
조직으로 하고,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약간의 부서
를 둘 수 있다. 기본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
임할 수 있다. 껄석으로 충원 된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

(6) 임원의 선출, 자격 및 임무

① 대표(회장)

- a. 대표(회장) 선출은 나라별 선교사회 회칙에 준하여
임명한다.
- b. 파송된 지 10년 이상 된 선교사로 한다.
- c. 대표(회장)의 임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선교사회
를 대표하고 선교사회의 주요 임무와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선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선교국에 정기
적인 보고(연2회)를 수행한다. 단, 위의 자격을 갖
출 수 없는 선교지는 선임선교사가 이에 준하는 나
라대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총무

- a. 나라별 선교사회 회칙에 준하여 임명한다.
- b. 파송된 지 8년 이상 된 선교사로 한다.
- c. 총무의 임무는 대표(회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대표(회장)유고 시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③ 서기, 회계, 감사: 나라별 선교사회 회칙에 준한다.

(7) 부서 구분 및 직능

- ① 선교부: 선교정책의 발전과 현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관장한다.
- ② 친교부: 회원들의 친교와 우의 증진을 위한 사업과 각종 모임을 관장한다.
- ③ 교육부: 회원의 선교사역 정보를 교환하는 간행물의 출판과 배부 사업 및 신임 선교사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④ 한인선교부: 한인선교 활성화와 한인선교를 통한 현지인 선교를 관장한다.
- ⑤ 선교사위기관리부: 본부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산하의 위기관리팀과 연계하여 선교사 가족과 사역을 관리하고 선교사위기관련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⑥ 경조사부: 선교사가족의 제반 애경조사를 관장한다.
- ⑦ 여성선교사부: 선교사회 내 여성선교사(교역자, 평신도, 전문인 명예)의 신변보호와 사역에 관한 업무

를 관장한다.

(8) 주요 회의 및 모임

- ① 정기총회: 연1회 또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임원 선출, 나라별 선교사회의 운영, 사업 등을 결정한다.
- ② 임시 총회: 임원 총원 등 중요한 사유가 있을 시 대표 또는 임원 중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③ 선교전략 및 정책세미나: 나라별 원활한 선교사업 추진과 본부 선교정책개발을 위해 세미나를 갖는다.
- ④ 선교사 수련회: 연 1회 또는 격년으로 선교사들의 재교육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9) 운영 및 감사

- ① 선교사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나라별 선교사 총회에서 정한 후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선교사회의 운영 및 사업은 선교사회 회비,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 ③ 선교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는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선교국 혹은 선교국이 지정한 감사단이 행한다.

(10) 선교사회와 본부 선교국과의 관계

- ① 선교사회는 본부 선교국 소속 산하단체로서 선교국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지도, 감독을 받으며 활동하여

야 한다.

- ② 대표선교사는 수시로 본국에 현지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알리며 선교국의 연락사항을 현지 선교사들에게 전달하고 위기관리는 위기관리 지침서에 준하여 대처한다.
- ③ 현지 총회, 선교사수련회 및 세미나에서 결정된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본국에 알리며 선교지 정책 및 전략, 선교사 수급, 교회개척 및 건축 등의 계획은 선교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현지인 동역자 관리

- ① 선교지 내 선교사들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선교활동을 위해 현지인 동역자들을 세워 협력 하도록 한다.
- ② 현지인 동역자에 대한 관리는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역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현지인 동역자들과의 관리는 해당 선교사와 협력하여 나라별 선교사회에서 담당하며, 선교사회에서는 이를 위한 원칙과 관리 규정을 만들어 선교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④ 선교지 내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은 선교사회를 통해 잘 관리 하도록 하며, 현지인 동역자가 맡아 사역할 경우에는 현지인 협력 선교사로 인준을 받은 후

선교사회의 준회원 자격으로 사역하도록 한다.

- ⑤ 현지인 동역자들이 감리교회 선교사 또는 목사가 되고자 할 경우, 소속 예정인 연회에서 회원자격을 갖춘 뒤 선교사 인준과정을 밟하도록 한다.

3) 지역선교사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친목도모와 선교사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선교사대회를 개최하고 전략적 선교를 위하여 선교국과 선교사간의 유대관계를 활성화 시키고 협력을 도모한다.

- (1) 명칭 : “기독교대한감리회 ○○○지역선교사회”라 칭한다.

- (2) 지역구분 : 총 14개 지역

- ① 동남아시아 : 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
- ② 동북아시아 : 대만/몽골/일본/중국
- ③ 필리핀
- ④ 인도차이나 : 태국/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라오스
- ⑤ 서남아시아 : 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인도/파키스탄
- ⑥ 중동 : 이스라엘/터키/바레인/이집트/모로코/요르단/U.A.E/알제리/이란
- ⑦ 러시아

- ⑧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젠
- ⑨ 아프리카 : 남아공/모잠비크/말라위/에디오피아/토고/케냐/탄자니아/세네갈/레소토/수단/스와질랜드
- ⑩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호주/마셜/괌/사이판/피지
- ⑪ 중남미 : 멕시코/도미니카/쿠바/자메이카/아르헨티나/페루/브라질/칠레/과테말라/에콰도르/파라과이/아이티
- ⑫ 북미 : 미국/캐나다
- ⑬ 동유럽 : 루마니아/헝가리/우그라이나/불가리아/몰도바/슬로베니아
- ⑭ 유럽 : 독일/영국/프랑스/이태리/네덜란드/오스트리아

(3) 주요 임무

- ① 지역에 맞는 선교정책 및 선교 전략연구 개발
- ② 지역 내 선교사 유대 강화 및 친목 도모
- ③ 선교사업과 관련사항 협의 및 협력

(4) 회원 구성 및 자격

‘세계감리교선교사회’의 임원 자격을 갖춘 나라대표 선교사들 중에서 지역대표를 선교국에서 선별하여 임명한다.



선교지 관리

1 신학교 설립, 운영 및 관리

1) 설립 조건

선교지에 이미 감리교회 계통의 신학교나 또는 협력 가능한 현지 교단의 신학교가 있을 시에는 협력 위탁을 통해 교역자 및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거나 또는 연합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시 신학교 설립을 신청 할 수 있다.

- (1) 현지에 신학교가 없어 현지 교역자 배출이 어려운 지역
- (2) 감리교회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지 선교부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설립절차

- (1) 가급적 성경학교 또는 제자훈련학교 과정을 거쳐 신학

교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2) 신학교 설립의 요청이 있을 시 현지 선교사대표는 선교 사회 합의를 거쳐 장, 단기 운영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교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교회 신학교 설립은 1개국/1개 신학교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가 설립 요청 시에는 선교국의 특별심사를 필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학사운영 및 관리

(1) 감리교회 선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신학교는 선교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신학교의 학사 운영 및 관리는 현지 나라대표의 지도하에 지역 선교사회 공동명의로 운영하도록 한다.

(3) 신학교의 재정 운영을 위해 선교사, 현지교회 대표자, 후원교회 대표자로 구성되는 후원 이사회를 둔다.

(4) 학제는 학부 3년, 6학기 이상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2년 4학기로 한다. 매 학기 6주,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을 하여야 한다.

(5) 교수진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선교사와 현지인으로 하며 기타 한국에서 객원교수를 초청하여 영성 훈련 및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신학생 입학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 세례교인으로

한다. 단, 현지 사정상 일률적인 학력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현지 선교사회의 합의 하에 기준을 정한다.

- (7) 교과과목은 일반 신학교육에 준하여 정하되 반드시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역사과목을 필하도록 한다.
- (8) 기타 자세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지 선교사회에서 학칙을 세워 운영한다.

2 현지인 목사 안수

파송선교사가 개척 설립한 현지교회들이 가능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과적인 현지교회와 교역자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현지인 목사 안수

현지인 목사안수는 감독회장(또는 선교국위원장)과 선교국 총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2) 현지인 교역자의 진급 자격기준

(1) 신학교 졸업자의 진급과정

현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중인 전도사는 매년 현지 선교사회 주관 하에 진급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진급과정 내용은 현지 선교사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선교국에 상정하여 승인 받은 후 실시한다.

(2) 준회원 목사안수

신학교 졸업한 후 3년간 담임전도사로 목회한 자는 진급 과정을 필한 후 준회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자는 2년간 목회를 필한 후 준회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3) 정회원 목사안수

준회원 목사안수 받은 후 2년간 담임목회를 한 자는 진급과정을 필한 후 정회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3) 현지 교역자의 자격과 권한

선교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협력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이들은 선교국 산하의 각 나라별선교사회의 협동회원으로 선교지에 한하여 설교와 성례전 등 목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갖는다.

3 선교지 재산관리

- 1)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선교사회의 지도 하에 관리하도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단,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 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도록 한다. 불이행 시 선교국은 선교사 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

회와 연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 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한다.

- 2) 선교사회가 없는 국가의 선교사는 선교사회 조직 시까지 법인 등록을 선교국과 협의하여 그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선교사회가 조직되면 선교사회와 선교국의 관리를 받는다.
- 3) 선교사회는 현지 사역에 필요한 합법적 기관으로 KMC 선교국을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근 제한지역에서는 선교국의 지도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
- 4) 선교지에서 구입하는 건물(교회, 사택, 선교센타, 신학교, 기숙사, 교육관, 훈련원) 및 건물 대지와 이에 관련하여 매입된 땅과 기타 건물은 선교사회와 선교국이 인정하는 법인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개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사정상 개인명의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서를 써서 후원교회(단체), 개인 후원자, 선교국에 제출해야 한다.
- 5)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본부 선교국, 현지 법인 또는 선교단체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 6) 선교사는 재산 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한다.
- 7) 선교사의 임지 이동(안식년, 귀국, 병가 등) 또는 변경 시에는 인수, 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선

교단체, 선교국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관리하도록 한다.

- 8) 선교지의 공동 소유재산은 ‘공동협약서’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공동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9) 선교지의 부동산은 선교국 소속교회(또는 후원단체), 소속 선교사, 나라대표 선교사 입회 하에 양도·양수토록 하며 그에 따른 모든 관련서류는 4부씩 작성하여 공히 보관하며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 10) 선교사역 관련 비품 등 선교기자재는 비품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며 선교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선교사회와 선교국의 지도를 받는다.
- 11) 상기 규정 불이행 시에는 본 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이미 구입된 모든 부동산 관리도 상기 규정에 준한다.

4 현지교회와의 협력사역

- 1)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 2) 선교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현지교회와 적극 협력한다.



선교사 복지

1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선교사 및 가족의 보험가입)

1)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범위

- (1) 보험은 의료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명보험도 가입을 권장한다.
- (2) 보험의 종류 및 회사는 선교국에서 통일적으로 추천하여 관리한다.
- (3) 보험제도가 발달한 선교지역의 경우는 현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 (4) 소속교회 또는 주 후원교회는 파송예배 전까지 선교사와 가족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증서(사본)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 (5) 선교국은 선교사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2 퇴직금

- 1) 주 후원교회는 매년 1개월분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적립하여 사직 시 지급한다.
- 2) 수혜 자격 : 퇴직금은 임기 4년 이상 계속 임직한 선교사에 한하여 수혜 할 수 있다.
- 3) 은급 혜택이 없는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 후원교회는 선교사의 매월 생활비(소득)에 준하여 선교사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은퇴 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의료 지원

- 1) 선교사의 모든 상해는 소속교회와 후원단체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선교국은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한다.
- 2) 선교지에서 발병한 질병 치료 및 상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3) 자연 재해나 폭동, 전쟁 등으로 인한 질환 치료와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사역 중 발생한 선교지에서 돌발 상황으로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서는 선교사 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 4) 선교국은 선교사와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국내,외 의료기관 및 보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종합검진, 인성검사 경비 등)
- 5) 질병 발생 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축한다.
- 6) 선교국은 KMC 파송선교사 부부에게 연 1회에 한하여 종합 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한다.
- 7) 파송선교사의 치료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구분	비율	비고
30만원 이하	100%	
30 - 50만원	70%	
50 - 70만원	60%	
70 - 150만원	50%	
150만원 이상	특인 사항	
※ 1회 지원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50만원 초과시에는 특인을 필한 후 지원할 수 있다.		

4 경조비 지원

- 1) 사건 발생 즉시 선교사회는 선교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선교국은 소속연회, 소속교회, 선교단체와 협의하여 선교사 행정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수행, 처리한다.

- 2) 선교지 혹은 한국 내에서 선교사 직계 가족의 각종 애경사(자녀결혼, 사망)에 대하여 선교국은 애경사 발생 시 100,000원의 경조비를 지원하며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에서는 50,000원의 경조비를 지원한다.

5 선교사자녀 장학금

1) 목적

요한 웨슬레의 선교정신을 계승하고, 영혼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소유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한국인, 국제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자녀 장학회에서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나아가서 세계교회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선교사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

본 장학재단 회원으로 가입한 선교사 자녀 중 국내,외에서 중학생 이상 대학원 재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지원 자격

- (1)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가(UN/UNCTAD

국가평가 기준)나 회교도, 이교도 중심의 선교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선교사 자녀

- (2) 현재 4년 이상 선교지에서 생활하며 선교현장에 거주하는 선교사자녀 현재 지속적으로 복음주의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Full Time)목사 또는 평신도 선교사의 자녀
- (3) 별도의 예외 지역에서 지원할 시에는 추가 지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 (4) 수혜기간 동안에 “한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한다.
- (5) 최대 2회 수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장학심사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회(총 3회) 더 지원할 수 있다.

4) 선발기준

- (1) 장학생 선발 심사는 장학재단 산하의 장학후원회의 운영 이사에서 주관하고 채택된 선발 내부규정에 따라 심의한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추인을 받는다.
- (2) 국내외 정규학교 재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자녀
- (3) 성적 평가는 나라,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까지는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를 근거로 하고 대학생인 경우 1~2학기 성적으로 총 평점 3.0 이상인 자녀
- (4) 자녀수가 한 가정에 3명 이상인 선교사 자녀

(5) 선교사 재정 상황과 선교지역 활동 내역 고려

(6) 학교장 또는 교수가 추천하는 선교사 자녀

5) 제출서류

(1) 장학금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이상만 제출

(양식 내 지정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3) 신앙간증문 1부 : 대학생을 제외한 초, 중, 고교생만 제출

(4) 재학증명서 및 전(全)학년 성적증명서(대학원 이상의 지원자는 대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각 1부

(5) 소속 학교의 추천서(대학생 이상의 경우는 지도교수 또는 총(학)장, 중·고생인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1부

(6)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외국인은 가족 등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후원(소속)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소정 양식) 1부

(8) 선교사 재직증명서 1부

(9) 장학위원회가 필요 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10)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게스트하우스

선교국은 연회 혹은 지방회, 후원교회와 선교단체가 협력하여 선교사가 국내 체류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

를 알선한다.

7 기타 선교기금 확충 및 운용

- 1) 국외선교업무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교국은 분과 위원회나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등을 통해 선교기금을 확충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 2) 선교기금은 선교사에 대한 재정지원, 후생복지, 재교육 등에 사용한다.



선교사 위기관리

오늘날 선교지, 특히 창의적 접근지역과 모슬렘 지역 등지에선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신변안전에 관련하여 갖가지 위기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선교사위기관리기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후원교회와 선교단체, 정부와 공동 대처하고자 한다.

1 위기관리 기본정책

1) 위기관리 팀(Crisis Management Team)

- (1) 목적 : 각 나라별 선교사회의 선교사와 그 가족 혹은 사역과 관련된 직원과 소유 자산이 중대한 위기로 인해 위협을 당하는 경우, 그 위기를 해결하고 위기 후의 후속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부 선교국 산하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CMC)에 위기관리팀(이하 CMT)을 둔다.

- (2) 설치 : 위기관리팀은 필요에 따라 본부 선교국과 각 나라에 설치한다.
- (3) 운영 : 위기관리팀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본부 선교국의 모든 구성원은 발생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제안,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CMT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부 선교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CMT의 사전 허락이나 지침 없이는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2)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

선교사들의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갖가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기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여 선교단체와 정부와 공동으로 대처한다.

(1) 조직

- ① 상임위원회
- ② 위기관리팀
- ③ 비상대책위원회
- ④ Member Care Team

(2) 위기관리 기본정책

① 위기 상황 전조대책

a. 위기관리 팀(Crisis Management Team)

선교사와 그 가족 혹은 사역과 관련된 직원과 소유

자산이 중대한 위기로 인해 위협을 당하는 경우에, 그 위기를 해결하고 위기 후의 후속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본 위원회 산하에 위기관리팀(이하 CMT)을 둔다. 위기관리 팀은 그 필요에 따라 각 선교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선교국과 현지 위기관리팀의 소재와 권한, 역할분담을 위기관리지침서에 규정한다. 위기관리팀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모든 구성원은 발생된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나 제안, 자료들을 일차적으로 CMT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CMT의 사전 허락이나 지침 없이는 위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조치도 취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기 상황 시 대책

a. 위기상황발생 시 행정절차 :

- a) 선교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전쟁, 선교사 및 자녀 납치, 순교, 사망, 사고 등으로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 b) 선교사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사역을 중단하고 철수하되 선교사회 회원이 모두 철수할 경우에는 현지 재산 처리와 사역을 선교국에 위임하며, 개별

철수 시에는 선교지 재산과 사역은 선교사회에서 인수하고 후원교회와 단체 및 선교국과 협의하여 그 행정 절차를 따른다.

c) 선교지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선교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대처한다. 선교사회 내의 위기관리팀이 활동을 시작하되 선교사관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d)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는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안에 따라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질 등으로 인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선교단체에 전문 협상가와 컨설턴트를 추천한다.

b. 몸값과 갈취에 대한 대책(Ransom and Extortion) : 선교사는 몸값이나 기타 갈취를 위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는다. 따라서 선교사는 납치를 통한 인질이나 갈취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는다.

c. 인질 협상(Hostage Negotiation) : CMT는 본 단체의 소속 회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피랍된 경우에 그 회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협상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CMT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협상가나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d. 철수(Evacuation) : 나라별 선교사회 소속 선교사가 사역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철수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은 선교국위원장 혹은 위임된 행정책임자에게 부여된다. CMT나 권한이 위임된 책임자가 철수를 결정하면 해당 선교사회 소속선교사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입장 때문에 현지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 단, 급작스럽게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CMT나 행정책임자와 상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선교사는 스스로 철수를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e. 위기 중의 커뮤니케이션 수칙(Communication During A Crisis) : 위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첩보 그리고 제안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CMT로 집결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회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제안을 받은 선교사회 산하의 CMT는 즉각적으로 선교사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위기상황 중에 모든 언론사, 뉴스매체(News Media)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MT의 책임 하에 속한다.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CMT의 책임 있는 요원이 아닌 그 어떤 본회의 구성원도 위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의견이라도 외부에 알려거나 개진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중 매체의 문의

는 CMT로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 f. 인질 회원의 가족에 대한 조치(Families of Hostages) : 선교사가 인질로 납치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인질로 피랍된 구성원의 가족은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서 철수하여 안전 지대로 대피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본회의 정책이다. 통상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그 가족의 본국이 될 것이다. 위기관리 기간 동안 본 회가 위임한 책임자를 인질 가족에게 배치하여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이 책임자는 가족들에게 수시로 새로운 상황이나 소식을 전달하고 가족들의 염려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3) 위기 상황 종료 후 후속대책

① 심리적인 상담(Psychological Consultation)

직접적으로 위기에 빠졌거나 위기상황을 경험한 모든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자격 있는 크리스천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후속적인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과 평가는 일차 위기상태의 종료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차적으로 6개월-12개월 후에 다시 행해져야 한다.(단, 정신건강 전문가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와 후속조치(치

료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담당 전문가가 이 문제를 대외 비로 행하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본 정책의 수행에 따르는 경비는 해당 선교사를 파송한 후원교회 및 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MT가 공동모금으로 보완 할 수 있다.

② 위기 후 평가 작업(Post-Crisis Evaluation)

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사후 평가가 수행되고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평가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평가 작업에 전문성있는 선교회 내부의 중립적인 인사로서 한국선교사 위기관리기구의 대표에 의해 임명되고, 직접 해당 위기 관리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과는 별도로 CMT와 관련 스태프들이 자체의 사후 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평가 영역은 위기의 다양한 변수들, 위기관리 조직의 초동 대응 상태, CMT의 위기관리 능력 등에 대해 다루어야 하고, 차후의 위기 사태에도 다시 발휘 될 수 있는 강점들과 개선되어야 할 약점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기관리 정책 개정과 재 설정의 필요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③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의 위기 예측의 단계와 후속 조치 사항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 예측단계 지침에 유의하며,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는 후원교회 및 선교단체의 위기관리 예측을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 a. 지역 분쟁 혹은 전면적인 전쟁 발발
- b. 인종,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소요, 폭동, 무정부 사태
- c. 기독교 사역자, 그리스도인 및 교회에 대한 테러, 납치 등 적대적 공격 행위
- d. 공안, 비밀경찰에 의한 체포, 구금 사태
- e. 비자 문제로 인한 철수 혹은 추방
- f. 정치, 종교적인 이유 혹은 금품 갈취를 위한 납치와 인질
- g. 교통사고, 강도, 폭행 등 각종 안전사고

이러한 모든 종류의 위기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조(前兆)단계에서부터 후원교회와 선교단체는 선교국 산하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의 CMT 가동체제로 운영한다. 일반적인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a) 1등급 : 선교사에게 위해나 위험이 임박해서 이미 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 - 내란상태 중 고립, 납치, 사고나 질병으로 한 중증의 위급사태 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

를 즉각 시행하는 시점

b) 2등급 : 선교사의 안전이 확률 상 50% 이상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비상 조치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 : 24시간 이내 전면적인 철수 혹은 최강도의 예방 조치가 발동되는 시점

c) 3등급 : 위기의 발전단계

(a) 악화와 소강 국면을 거듭하며 전망이 분명치 않은 상황 : 위기의 가능성이 잠재적이지만 동시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 할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점

(b) 때로 소강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 : 현지와 본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관리 체제를 계속 탄력적으로 가동시키고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대비해야 한다.

d) 4등급 :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단계

(a) 위기의 전조 징후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간헐적으로 표출 되는 시점

(b) 국내,외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거나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는 시점

(c) 다양한 정보원들이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예측들을 엇갈리게 표출하는 시점

- (d) 나라대표 선교사나 현지 위기관리팀의 공식적인 소집을 요청하여 가동에 들어간다.
- (e) 선교국도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가동한다.
- (f) 현지와 선교국은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후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g)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전 준비 단계로서 비상 식량 확보, 대피를 위한 짐꾸리기 등 사전조치를 시작한다.

위와 같은 4단계의 위기 예측과정을 설정할 때, 위기관리팀이 선교국위원장 혹은 총무에게 최초의 보고를 하는 시점은 제4등급이며, 위기관리위원회, 위기관리팀의 가동은 3등급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앞당겨 발생 가능한 상황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집중적인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자문역(Consultant)의 조언과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 3등급이다.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는 초기 단계일수록 효과적이다.

3) 커뮤니케이션 체계

- (1) 위기 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경로는 선교사 ⇔ 나라별

선교사회 대표선교사 ⇔ 위기관리팀장(지역책임자) ⇔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이다.

- (2) 각 나라 선교사회 대표선교사와 지역책임자는 평소와 위기 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외부와 직접통화가 가능한 전용 전화 회선이나 이메일을 확보한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다른 선교사나 현지인의 통신망을 확보해서 선교국과의 연락망을 구성한다.
- (3)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가 가동되는 즉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대표선교사 ⇔ 위기관리팀장 ⇔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의 체제로 이루어진다.
- (4) 평소에 각 선교사회 소속선교사는 대표선교사에게, 대표선교사는 지역책임자에게 지방으로의 여행 혹은 국외 출국에 대해 필히 소재지 보고를 하도록 한다. 위기관리 시 소재보고는 보다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5) 선교국은 선교사 위기관리위원회 가동을 위해 사전에 부서 내 비상망 조직과 각 구성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한다. 비상 시 위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별도 규정에 준하여 운영된다.
- (6) 원활한 정보통신과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갖추고 선교국내 비상 통신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상황의 진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공지한다.



선교사 관련 연회행정

1 진급과정 선교사 행정관리

1) 진급과정 사무행정

(1) 시행공고

준회원 과정고시는 매년 6월초 기독교세계에 게재하며 소속 연회는 각 해당자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한다.

(2) 지방회원 자격 취득 기준

10월(하반기)에 인준 받은 자가 당해 연도에 구비서류를 연회에 제출할 시에는 지방회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회원 자격을 갖는다.

(3) 서리 또는 수련선교사의 '특별파송'은 목사 안수 후, 교회주소록 '특별파송'란에 게재 된다.

2) 서리 진급과정 안내(목사 안수 전 과정)

진급과정 내용	서리파송 예정자	준회원 허입예정자 (서리/수련선교사)
1. 서류마감	5월 말까지	9월 초까지
2. 제출서류	1. 전도사임보고서 2. 구역전도사결의서(구역회) 3. 신학대학졸업증명서 4. M-Div./학부졸업증명서 5.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6. 신학대학원성적증명서 (전 학년) 7. 이력서(선교사인준일자/ 서리파송 받은 날짜 명기) 8. 주민등록등본 9. 인준확인서(본부 선교국) 10. 생활비부담보증서 (100만원 이상 최저생계비) 11. 지방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리/장로)	1. 이력서 2. 명함판사진 4매 3. 호적등본 1통 4. 신학(일반)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5. 구역담임자보고서 6.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7. 교역자신상기록카드 8. 재단 편입증명서 (또는 재단 편입불가확인서) 9. 은급기여금납입증명서 10. 지방회추천서(지방회 후) 11. 자원봉사(40시간) 이수증 (선교국 발행)
3. 교육 (신학+영성)	없 음	10월 중 실시
4. 성경시험		10월 중 실시
5. 과정고시 (신학4과목)		11월 중 실시
6. 논문 제출		11월 말까지 제출
7. 과정. 자격 (논문)심사		이듬해 2~3월 중 실시
8. 목사안수		이듬해 목사안수 예정
REMARKS : ■ 연회별 일정 조정 가능 함. 1. 연회별로 교육과 시험을 동시에 또는 따로 실시 2. 시험시간 : 신학 160분, 성경 60분 3. 평가기준 : 과목당 40점미만 과락/평점 60점 이상인 자 합격처리		

3) 준회원 진급과정 안내(목사 안수 후 과정)

진급과정 내용	준 1 년 급	준2년급(정회원 허입 예정자)
1. 서류마감	9월 초	9월 초
2. 제출서류	없 음	1. 정회원 허입원서(소정양식) 2.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3. 건강진단서 및 정신과 검진 (3개월 이내/연회 지정병원) 4. 교회건물 및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재단편입 불가확인서
3. 교육 (신학+영성)	선교사 면제	선교사 면제
4. 성경시험	연회 전 실시	연회 전 실시
5. 과정고시 (신학4과목)	Book Review	Book Review
6. 논문 제출	11월 말까지 제출	11월 말까지 제출
7. 과정, 자격 (논문)심사	연회 전 실시	연회 전 실시
8. 목사안수	목사 안수 (준1년)	정회원 허입(연회)
REMARKS : ■ 연회별 일정 조정 가능 함.		

4) 자격별 과정고시 필기시험 과목

연급	신 학			성경
	과목명	서 적 명	저자/역자	
허 입	교회성장학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도날드 F밀러/이원규	성 경 통 독 고 시
	예배학	예배를 확 바꿔라	엔디 랑포드/전병식	
	교회행정학	교회 행정과 목회(개정판)	권오서	
	성서주예	성경주석학	칼 할러데이, 존 헤이즈	

연급	신 학			성경
	과목명	서 적 명	저자/역자	
1 년 급	목회학	새 시대 새 목회	도날드 E. 메서/이면주	성경 통 독 고 시
	설교학	말씀을 해방시켜라	유성준	
	선교, 전도학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장성배	
	성서신학	신구약 성서신학	BS차일즈/유명선	
2 년 급	기독교윤리학	그리스도교 윤리	김영일	
	교육신학	교육목회 실천	임영택	
	조직신학	감리교회 신학	W.클라이버/M.마르쿠바르트	
	상담학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칼로저스/한승호/한승열	

2 인사 행정

- 1)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이동 할 시
 - (1) 구역담임결의서(부담임인 경우: 담임자 확인)
 - (2) 구역이임결의서
- 2) 교회에서 기관으로 이동 시
 - (1) 구역이임결의서
 - (2) 파송청원서(기관 이명권자 발행)
 - (3) 소속청원서
- 3) 기관에서 교회로 이동 시
 - (1) 구역담임(부담임)결의서
 - (2) 소속이임서

(3) 사임확인서(전 근무지)

4) 서리교역자 임, 면보고 시

(1) 서리담임(임, 면)보고서

(2) 구역담임결의서

(3)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5) 이력서

(6) 주민등록등본

(7) 생활비 부담 보증서(3편/68조/②항)

5) 선교사, 군목후보자, 수련목회자 신규임,면보고 시

(1) 전도사(임, 면)보고서

(2) 구역전도사결의서

(3) 신학대학 졸업증명서(M-Div. : 학부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 이력서

(5) 주민등록등본

(6) 생활비 부담보증서(3편/68조/②항)

(7) 선교사 인준확인서(선교사), 군종사관 후보생증명서(군목), 수련목회자 합격증 사본/영성수련회 이수증(수련목회자)

(8) 지방 인사위원회 회의록

- 6) 선교사, 군목에서 교회로 이동 시
 - (1) 구역담임(부담임)결의서
 - (2) 귀국보고서 : 선교사사직서(선교국에 제출), 제대증 사본(군목)
- 7) 기관목사(선교사, 군목), 수련목회자의 구역소속 이동 시
 - (1) 소속이동청원서
- 8)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올 시(3편/9장/2절/182조)
 - (1) 중등학교이상 졸업증명서
 - (2) 학위증명서
 - (3) 안수증명서
 - (4) 경력증명서
 - (5) 호적등본

3 교회 행정 (2009.5.1 기준)

- 1) 교회설립 시
 - (1) 교회설립보고서
 - (2) 위치도
 - (3) 평면도
 - (4) 사용승낙서(계약서 사본)
 - (5) 재단편입증명서(또는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
 - (6) 지방 실행부위원회 회의록(결의)

2) 교회폐지 시

- (1) 교회폐지보고서
- (2) 지방 실행부위원회 회의록(결의/재산, 비품처리)

3) 교회 위치변경 시

- (1) 교회 위치 변경보고서
- (2) 위치도
- (3) 평면도
- (4) 사용승낙서(계약서 사본)
- (5) 재단편입증명서(또는 재단편입 불가 확인서)

4) 교회명칭 변경 시

- (1) 교회명칭 변경보고서
- (2) 구역회 회의록

5) 교회위치 및 지방 소속변경 시

- (1) 교회 위치 및 지방 소속 변경보고서
- (2) 각 지방 실행부위원회 결의서

6) 교회 통합 시

- (1) 교회 통합보고서
- (2) 각 지방 실행부위원회 결의서

7) 회원 자격 행정처리 기준

- (1) 미파: 이임 후 3개월 이내 신 임지가 없을 시
(연회 내규 제8장 교회의 설립과 교역자파송/제

39조/③번 마항)

- (2) 직임 정지: 파송 불복 시 (장정 3편/3장/1절/82조 ③항)
- (3) 휴직: 미파 2년 이상일 시 (장정 3편/3장/1절/82조②항)
- (4) 퇴회: 휴직, 정직 4년 이상 일 시

(장정 3편/3장/1절/82조⑤항)

8) 기타 연회 행정서류 작성 시 유념해야 할 사항

- (1) 교역자 임명 청원은 전임자의 면 처리 후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2) 교회에서 기관으로 임명 시 구역소속청원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3) 모든 인사서류에는 담임, 부담임 또는 소속을 필히 명기하여야 한다.
- (4)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이임결의가 부결될 시에는 본인 사임서(지방 감리사의 확인 날인 필요)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교회명칭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역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6) 교회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폐지에 따른 잔무 처리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재산, 비품 처리 등)
- (7) 교회 위치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리사(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여야 한다.

- (8) 은퇴목사의 소속은 담임교회에 소속하며 소속이동청원서를 제출하여 감독 결재를 받은 후 「기독교세계」에 공고하도록 한다.



감리교회 해외선교 가이드북

발행인 | 이원재 목사 (선교국 총무)

편집인 | 한미령 목사 (해외선교기획부장/☎ 02) 399-3954)

발행일 | 2010년 6월 15일

발행처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10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4-8 감리회관 13층

www.kmcmmission.or.kr

* 비매품